

도일이 중심 실뢰받는 의회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3. 17.(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발 의 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O 발의일자: 2023년 3월 7일
 - O 회부일자: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O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이유

- 200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¹⁾이 2023년 합계출 산율 0.78을 기록하며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고²⁾,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³⁾이 시작된 이후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해 있는 상태임.
- 이같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10월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2022년 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재원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¹⁾ OECD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3이하인 현상

²⁾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보고서: 2023~2026년 기간 우리나라 총인구는 연평균 0.11씩 가소하고, 합계출 산율은 2022년 0.76명에서 2026년 0.69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함

³⁾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

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곳)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곳)	남구, 서구		
인천(2곳)	강화군, 옹진군		
경기(2곳)	가평군, 연천군		
강원(12곳)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곳)	과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선시		
충남(9곳)	공주시, 금산군, 논사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곳)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곳)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包括(10人)	진도군, 해남군, 회순군		
경 북 (16곳)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8円(10天)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곳)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충북은 현재 11개 시군 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음성과 충주도 인구감소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충북의 2/3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지역은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초래되어 충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있음.
-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학교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및 사회·문화·체육 등 지역공동체 활동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 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의 학력격차,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격차는 학령기 자녀를 둔 주민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인구 유입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폐교와 학교통폐합을 초래하며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가속 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충북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는 충북의 존폐를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로서 도와 지자체는 물론 충청북도교육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 교육기반 확충 규정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중 등교육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 하여 「평생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3.} 해당 지역의 현안

개선을 도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 시기성이 인정되는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됨

○ 현재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교육지원 관련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현황, 요구들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과 같은 선제적 대응은 매우 바람직하며 고무적이라 사료되며,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관련 교육청 조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등 인구 감소지역 지정 지역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시한 것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업 추진 목적을 공고히 할 것으로 사료되며
- O 안 제4조에는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 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5조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예산 확보와 예산을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하도록 규정한 것과 안 제7조에 인구

감소지역 교육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 등을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와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 예산 지원을 조례 제정 즉시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인구감소지역에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사료됨

-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8조는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협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제2조에는 본 조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교육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의「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 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했던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ㆍ지역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재앙',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되며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최고의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 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은 기존에 충청북도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해 오던 사업 대상이 인구감소지역과 중복되거나 확대¹⁾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근거하여 교육균형발전 지원 사업을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본 조례안의 비용 추계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인구감소지역 (행안부, '21. 10 .19.)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대상
1)	제천 , 보은, 옥천 , 영동, 괴산, 단양	[2021] 보은, 옥천 , 영동, 괴산, 단양 [2022] 보은, 영동, 괴산, 단양